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9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4.1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폐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4.23.)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서범수)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20여년간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규모는 0.3%로 미국 6%, 일본 3%, 싱가포르 20%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임.

리츠는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41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리츠 운영 단계에서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직된 리츠 규제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시·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려고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보고·공시 사항 등 조정

(안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함),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적용되는 보고 및 공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법령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43건의 보고·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법 제30조에 따라 리츠와 해당 리츠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등 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기존의 보고 및 공시사항은 축소·조정하려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와 리츠 규제 완화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보고·공시 사항 등의 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리츠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

(안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

개정안은 리츠의 수시보고 사항 중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을 보고사항에서 제외(현행 제41조제1항제3호 삭제)하는 한편, 제

37조제3항에 따라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가 수시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항목을 추가(안 제37조제3항제3호의3 신설)하려는 것임.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은 리츠와 소위 ‘이해관계자’ 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의 체결을 의미함.

현행법 제30조제2항은 일반분양·경쟁입찰 등으로 거래가격의 객관성이 담보되는 거래, 이사회·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리츠가 이해관계자와 예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아울러, 리츠와 이해관계자 간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가 체결된 경우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 제30조제1항은 리츠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고 있으면서도, 제30조제2항은 거래가격의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리츠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음.

다만, 리츠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는 채권자, 소액주주 또는 잠재적 투자자 등의 이익과 결부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고 의무로는 관련 정보가 일반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리츠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를 공시의무로 전환하여 리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리츠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 기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리츠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 사실을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에서 소외되는 채권자나 소액주주 등에게도 해당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제24조제3항)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리츠 또는 자산관리회사에게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안 제24조제3항은 이 중 실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실사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집합투자업자와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 리츠 또는 자산관리회사에만 적용되는 의무임.

한편, 실사보고서는 현행법에 따른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라 실사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리츠정보시스템”이라 함) 또는 자체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이 실사보고서와 관련한 작성·제출·비치 의무 중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작성·비치 의무만을 규정하려는 것은 유사 집합투자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를 통해 의무이행이 보완될 수 있는 행정사항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실사보고서가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수시 공시되고 있어 별도 제출 필요가 낮고, 제출 의무가 삭제되어도 변경인가·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실사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한편,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① 실사보고서 공시 의무는 법률에 따른 의무는 아니고, ② 「감독규정」에 따른 실사보고서 공시는 실사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사보고서의 상세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달리 사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제37조제1항)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리츠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

안 제37조제1항은 이와 같은 투자보고서 작성·제출·공시 의무 중 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작성·공시 의무만을 유지하려는 것임.

투자보고서는 현행법에 따라 분기별로 리츠정보시스템과 리츠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므로 이 외에 감독당국에 동일한 자료를 별도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리츠에 부과되는 중복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취지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에 따른 과태료의 조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현행법 제54조제2항제8호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투자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므로 해당 과태료 규정도 수정될 필요가 있음.

(4)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사실 등의 공시의무 폐지(안 제37조제3항)

현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이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사실 등”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

안 제37조제3항은 이와 같이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37조제3항제1호 삭제).

현재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리츠정보시스템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사실 등을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 17개 사항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해당 의무를 경감함으로써 합리적인 리츠 규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사실 등의 공시의무 폐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동의하는 입장으로, 「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매분기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에 ‘자산운용 전문인력 현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리츠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사실 등을 추가

적으로 공시할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한편,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공시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과 결부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경사실 등을 지체 없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① 영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는 법률에 따른 의무가 아니고 자산관리회사에 국한되며, ② 투자자들이 영업보고서를 열람하여도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경’사실 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

③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시공시 의무를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타 집합투자업자에게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에 대한 공시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개정안 심사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의무 폐지(안 제41조제1항·제2항)

현행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는 임원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도 같은 사유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은 이와 같이 각각 리츠,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자문회사(이하 “리츠등”이라 함)에 적용되는 임원의 변경 사실에 대한 수시보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삭제).

개정안은 리츠등의 임원 변경 사실을 현행 관계법령에 따라 감독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26개 사항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해당 의무를 경감함으로써 합리적인 리츠 규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의무 폐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동의하는 입장으로, 리츠의 임원 현황은 「감독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고 자산관리회사의 임원 현황은 「감독규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므로, 임원의 변경 사실을 추가적으로 보고할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한편,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보고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원 변경 사실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이나,

① 영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는 법률에 따른 의무가 아니고 부동산투자자자문회사의 임원 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는 하위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② 국토교통부가 임원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려면 현행과 달리 사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정관의 변경 사실 보고의무 신설(안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41조제1항제2호의2는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가 수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정관의 변경’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40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정관의 변경은 변경인가·등록 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규정」 제6조는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리츠의 정관을 리츠정보시스템 등에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현행 감독 조치에 더하여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정관의 변경 사실을 수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리츠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자기관리 리츠 또는 위탁관리 리츠 등의 자산관리회사는 현행법 제54조제2항제1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0조제1항은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정관의 변경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정관의 변경 사항에 대해 리츠에게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보고의 대상이 되는 정관의 변경 범위에 관하여 투자자보호 필요성과 리츠 규제 합리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유관기관의 의견

리츠,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적용되는 보고 및 공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한국리츠협회는 총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은 그동안 과도하고 중복된 보고·공시 의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시간이 소요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나. 정관의 변경 중 변경인가·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준 개편 (안 제40조제1항제1호)

개정안은 ‘정관의 변경’ 중 변경인가·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개편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40조제1항은 리츠가 정관의 변경 행위를 하려면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가·변경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을 종합하면 리츠의 ‘상호’(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본점의 소재지’(법 제8조제1항제9호)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낮은 사항까지 변경인가·변경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편,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항제8호) 등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 중 일부가 변경인가·변경등록의 관리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관의 변경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인가·변경등록을 거치도록 관리 기준을 개편하고 대통령령 위임 사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에 대한 관리 기준을 기존의 ‘경미성’에서 ‘투자자 보호와의 관련성’으로 변경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관점이 제도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고 규제도 합리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토교통부는 변경인가·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관의 변경 사항을 투자자 보호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변경인가 대상이 되는 정관의 변경 사항에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항제8호) 등을 추가하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낮은 사항은 제외하는 등 개정안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다. 공모예외 리츠의 보고·공시 간소화(안 제49조의8 신설)

안 제49조의8은 현행법 제14조의8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모 리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리츠(이하 “공모예외 리츠”라 함)와 그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보고·공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안 제49조의8에 따르면, 공모예외 리츠와 그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 작성·제공, 제2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 실시 및 결과 공시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 공시 의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시공시 의무 및 제41조에 따른 수시보고 의무 등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됨.

대신,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예외 리츠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제공 의무는 제출 의무로 전환되고,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제출·공시 의무는 제출 의무로 완화되며, 제3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수시공시 사항 중 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시공시 의무가 유지되도록 특례가 부여됨.

다만, 안 제4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상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음.

공모예외 리츠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금이 보유하고 있거나 총자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구성한 리츠로서 공공성을 인정받아 공모 의무가 면제됨. 이로써 공모예외 리츠

의 투자자는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일반 투자자의 비중이 작은 특징이 있음.

이와 같은 투자자 구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투자위험 우려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모예외 리츠에 공모 리츠와 동일하게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고·공시의무 등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규제 효과 또한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공모예외 리츠에 대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가 유지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설명서·투자보고서 제출 및 금융사고·부실자산 발생 사실 공시 등 시장 관리를 위한 필요최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규제 실익이 낮은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됨으로써 리츠 시장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모예외 리츠에 대해 보고·공시 의무를 간소화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공모예외 리츠에서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이 전가될 우려가 낮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에 따라 각종 보고·공시 의무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모예외리츠를 구성하는 주주 중 일반 투자자와 관련이 있는 상장리츠·공모부동산펀드 및 특정 금전운용 신탁업자 등의 주주가 참여하는 공모예외리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고·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서범수의원, 김정재의원 및 염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